

11.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9월 6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19년 9월 9일
- 상정일자 :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9월 20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)

□ 제안이유

- 2019. 12. 31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·아동 보호 및 활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시 설 명	구 분	2019년 예산지원 (천원)	위탁시설 개요
중장기청소년 쉼 터(남)	재위탁	225,98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탁근거 :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6조 • 현 수탁기관 : (재)대구기독교청년회 • 소 재 지 : 중구 남산로8길 14(남산동) • 시설규모 : 연면적 103.5㎡ • 주요시설 : 사무실, 거실, 식당, 세탁실 등 • 최초 위탁일 : 2014. 4. 24. • 향후 위탁기간 : 3년(2020. 1. 1.~2022. 12. 31.) •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경쟁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19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(2020. 1. 1. ~ 2022. 12. 31.) 재위탁하려는 것임.
-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현재 (재)대구기독교청년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
 - ※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: (재)대구기독교청년회('17. 1. 1. ~ '19. 12. 31.)
- 주요 위탁 업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제공, 상담, 선도 활동,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, 사례관리, 지역 사회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협력 등임.

□ 검토결과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가 개정(2018. 8. 10.) 되면서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(재위탁) 운영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.
-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각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,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음.
- 또한 위탁운영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「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.
- 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’ 등 청소년시설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상위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, 최근 평가결과에서는 이전 평가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향후 재위탁 공모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.

※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비고
청소년문화의집	S 등급 (94.80점)	-	가 등급 (90.45점)	
청소년수련원	A 등급 (89.68점)	나 등급 (87.88점)	나 등급 (86.53점)	
청소년성문화센터	S 등급 (91.11점)	-	나 등급 (89.14점)	
대구중장기청소년 쉼터(남)	A 등급 (84.84점)	-	다 등급 (76.33점)	
대구중장기청소년 쉼터(여)	S 등급 (92.17점)	-	나 등급 (87.82점)	

-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을 하여야 하겠으며,
- 민간위탁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와 함께,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 방안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평가 등급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공모시 해당 기관에 대해 철저한 반영 필요함.</p>	<p>그렇게 하겠음.</p>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